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의2 신설).
-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전면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

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3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첫째,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과 관련하여 위임입법 명시,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항 정리 및 부칙 적용례 수정 필요

- (위임입법 명시) 안 제36조제4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 등의 부득이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함이 필요할 것이나 이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용어의 명확화) 개정안은 현행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철회”에 대한 손실보상의 내용을 안 제36조제5항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사용·수익기간 연장의 내용도 안 제36조제5항에 추가하여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그런데, 안 제36조제5항에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을 통합 규정하면서 손실보상의 주체를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분리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주체별로 각각 구분하면, 허가 철회에 대한 손실보상 주체인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¹⁾²⁾ 일시 중단의 손

1) 아래의 조문(밑줄)과 같이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또한, 현행법상 “기관”에 대한 정의나 약칭이 존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조문과 같이 국가기관,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조문이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 단어는 유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실보상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안 제36조제5항 중 허가의 “철회” 및 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은 안 제36조제3항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일시 중단” 및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③ ----- ----- ----- ----- ----- ----- ----- ----- ----- .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 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 보상에 갈음하여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④ -----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⑤ 제4항에 따른 ----- 중앙관서의 장은 ----- 다만, 사용허가를 -----
---	---	---

	에 상당하는 기간을	-----
	중전의 사용허가 기간	-----
	에 더하여 사용허가	-----
	기간을 연장할 수 있	-----
	다.	-.

- (부칙의 적용례 수정)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안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에 대한 적용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기간 연장을 함께 소급 적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안 제36조제5항)을 부칙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부 칙	수 정 의 견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하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	-----
다.	-----.

둘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

- 안 제10조의2는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유재산 매각 사실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보고 대상을 정함에 있어 그 대강이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을 통해 국회 보고 대상을 모두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³⁾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고 대상의 규모나 그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1건당 500억원 초과 시 국회에 “사전보고”를, 계약가 10억원 초과 재산의 매각·교환 리스트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등”을 통해 국회 보

3)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으려는 필수적인 국유재산 매각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제외하여 규정한다면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개정안에서 반영하려는 국회 상임위 보고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것임.

고를 예정·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나 “결산 등”을 통한 사후 보고는 개정안의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과는 맞지 않으므로, 향후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u> <u>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